

고영향 인공지능 확인[] 재확인[] 요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	
요청인	상 호 (사업자명)			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	
	대표자 성명						
	주 소						
	업무담당자 (또는 국내대리인)	성 명					
		연락처(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)					
	요 청 구 분	[] 인공지능개발사업자 [] 인공지능이용사업자					
요청 인공지능	인 공 지 능 명 칭	(개발국가)					
	기 본 모 델	(명칭)					
		(인공지능개발사업자/개발국가)					
	파 생 모 델	(명칭)					
		(인공지능개발사업자/개발국가)					
	용 도						
	인 공 지 능 적 용 영 역	[] 에너지		[] 먹는물		[] 보건의료	
[] 의료기기		[] 원자력		[] 범죄 수사·체포			
[] 채용·대출 심사		[] 교통		[] 공공서비스			
[] 교육		[] 기타					
기 타	* 재 확인의 경우 재 확인 요청의 취지와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.						
사전 검토결과	검 토 결 과	[]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					
		[]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음					
		[] 판단할 수 없음					
검 토 근 거							

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(재확인)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

제출서류	1.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시 가.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나.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다.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.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.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시 1.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.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

- 가. "요청인" 항목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, "업무담당자" 항목에는 해당 법인의 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나. "대표자 성명"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.
- 다. "상호" 항목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(주)의 형태로 적습니다.
- 라. "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" 항목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(둘 또는 하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.)
- 마. "요청구분" 항목에는 요청인의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(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)에 표시합니다.
- 바.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찍습니다.

2.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

- 가. "요청인" 항목의 "상호", "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"는 빈칸으로 두고, "주소" 항목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
- 나. "업무담당자" 항목은 요청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다. 요청하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
3. "요청 인공지능" 항목의 작성방법

- 가. "인공지능 명칭" 항목은 요청 대상 인공지능의 정식 명칭을 적으며, 약칭, 별명 등을 적지 않습니다.
- 나. "기본모델"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모델명(버전이 있는 경우 버전)과 기본모델의 개발사업자를 적습니다.
- 다. "파생모델" 항목은 기본모델에서 파생된 세부 모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모델명(버전이 있는 경우 버전)과 파생모델의 개발사업자를 적습니다.
- ※ 가부터 다까지의 항목에서 개발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개발국가명을 기재합니다. 요청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.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,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라. "용도"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의 주요 사용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마. "인공지능 적용영역" 항목은 해당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을 선택합니다.
- 바. "기타" 항목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.

4. "사전 검토결과" 항목의 작성방법

- 가. "검토결과" 항목에는 해당하는 결과에 표시합니다.
- 나. "검토근거" 항목에는 사전 검토결과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고,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5. 제출서류

- 가. "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"는 기본모델, 파생모델 및 요청 인공지능의 제품사양서 등 인공지능의 성능,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며, 인공지능이 사용된 전체 시스템(제품 또는 서비스)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개요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나. "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"는 학습용데이터의 종류, 출처, 규모 등을 작성하며, 개인정보(민감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), 영업비밀 등을 학습에 사용하였는지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다. "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"는 요청 인공지능의 입력, 처리, 출력 등 활용 과정을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및 활용 결과물에 대한 예시 또는 설명 자료를 제출합니다.
- 라. "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"는 위의 가부터 다까지의 서류 외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필요하거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제출서류의 양식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, 요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바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제품사양서 등 관련 자료가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, 필요한 범위에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.

처리절차

